

자원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 이웃이 알맞은 주택을 찾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 리소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 부서:

800-884-1684 (음성) 800-700-2320 (TTY)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 www.calcivilrights.ca.gov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

(800) 347-3739 www.hud.gov

캘리포니아 소비자 담당부:

(800) 952-5210 www.dca.ca.gov

CA 이동 주택 고충 담당자:

(800) 952-5275 www.hcd.ca.gov

감시 프로젝트: housing.org

전국 주택 정의: nhlp.org

주택 권리 센터, 로스앤젤레스: hrc-la.org

법률 조언 재단, 로스앤젤레스: lawhelpca.org

베이 지역 법률 지원: baylegal.org

공정 주택 오렌지 카운티: fairhousingoc.org

중부 캘리포니아 공정 주택 위원회: fhc-cc.org

희망과 기회를 위한 에덴 위원회: echofairhousing.org

리버사이드 카운티 공정 주택 위원회: fairhousing.net

샌디에고 공정 주택 위원회: fhcsd.com

나파 밸리 공정 주택: napafairhousing.org

북부 캘리포니아의 공정 주택 옹호회: fairhousingnorcal.org

인랜드 공정 주택 및 중재 위원회: ifhmb.com

당신의 공정한 주거권에 관해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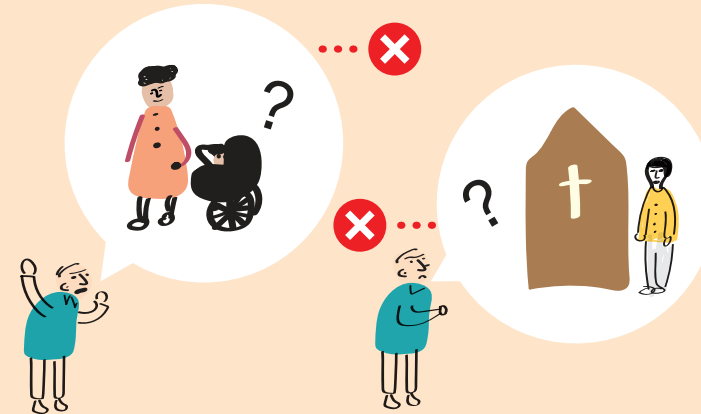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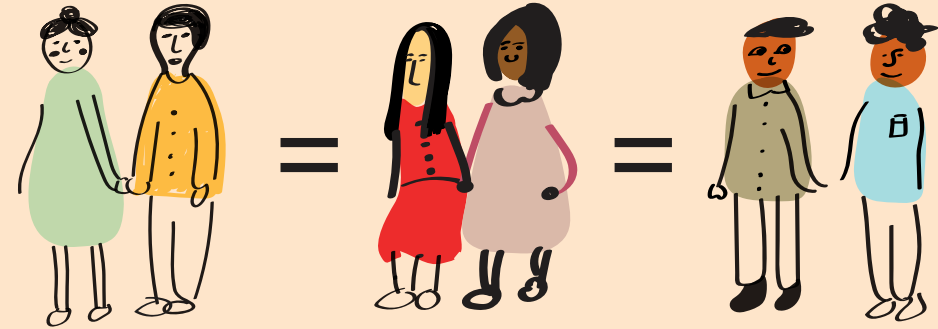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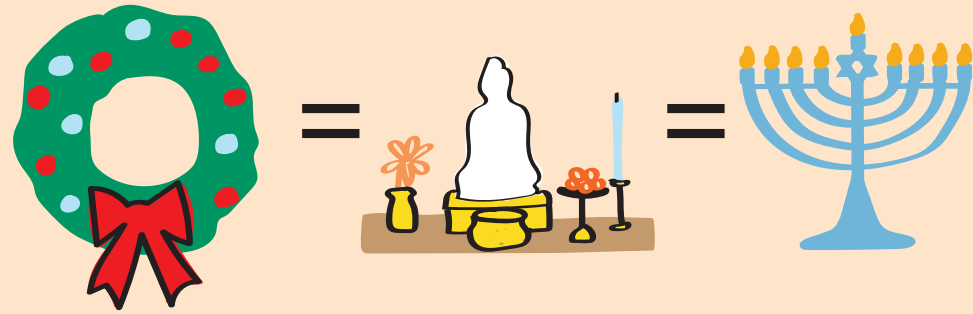
귀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 차별은 심각하면서도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 및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며 이 특성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령
- 인종, 피부색
- 혈통, 출신 국가
- 종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성별
- 성적 성향
- 성 정체성, 성별 표현
- 유전 정보
- 혼인 여부
- 가족 상황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등)
- 소득원
- 이민 여부
- 주 언어
- 시민권 소지 여부
- 군인 및 참전 신분

1. 평등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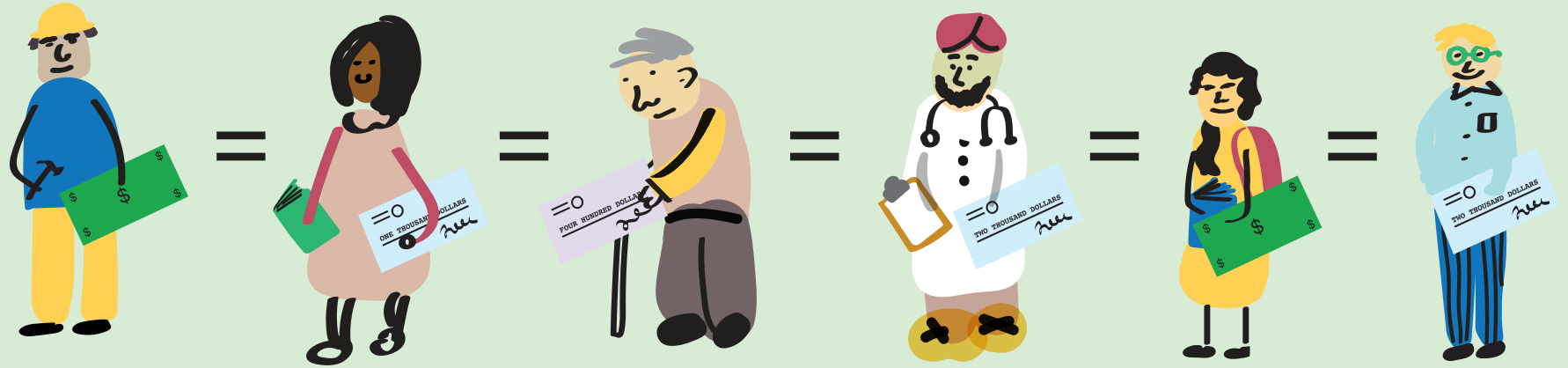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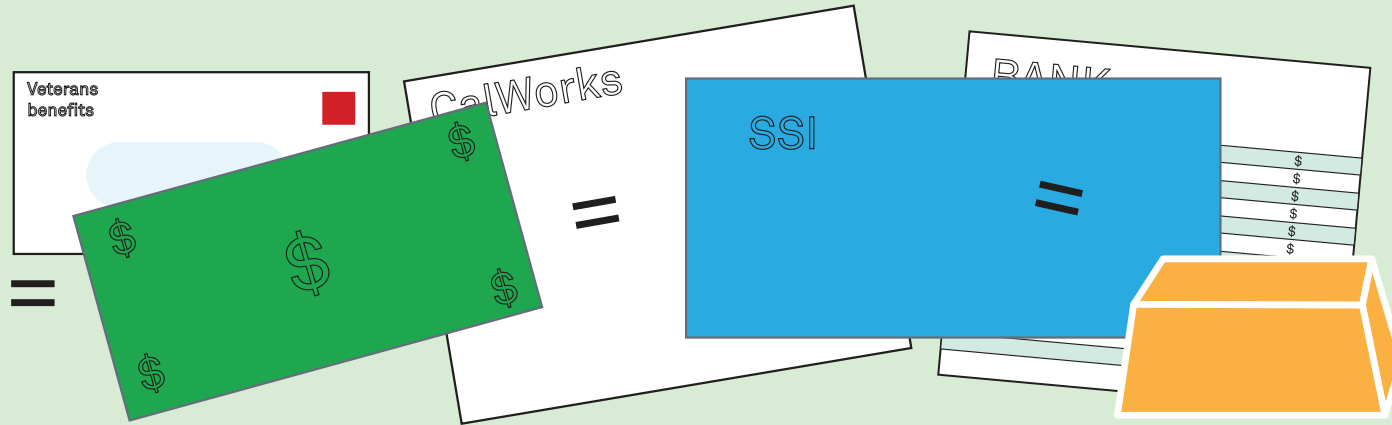
공정 주택 거래법은 세입자의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을 근거로 임대료, 수리비, 보증금 및 수수료에 관한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합니다. 차별 징후에는 주택 공급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특정 인종 또는 국적의 손님을 의심하고 방문을 막는 행위
- 공동 구역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십자가를 허용하지만 타 종교에 있어 일반적인 장식, 제단 또는 물건을 금지하는 행위
-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대하는 행위
- 세입자가 LGBTQ 또는 서로 다른 인종의 커플이라는 이유로, 또는 기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과 관련된 이유로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세입자의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장애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또는 세입자가 본인 과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이유로 해당 집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위

특정 언급이나 질문이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막거나 차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차별 징후의 예:

- "어느 나라 출신이냐?", "아이를 가질 계획이냐?" 또는 "교회에 다니느냐?"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질문
- 세입자에게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거나, 임대를 신청하려는 주택 보다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 가족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충 문제에 대해 비난하는 등 민족적 고정관념과 관련된 언급.
- 전화로 문의했을 때 임대 가능했던 곳이 방문 시 갑자기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행위
- 공동 주택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을 근거로 거부함을 암시하는 언급의 예: "독신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이라서 라이프스타일에 맞을지 잘 모르겠다."

2. 수입



소득원과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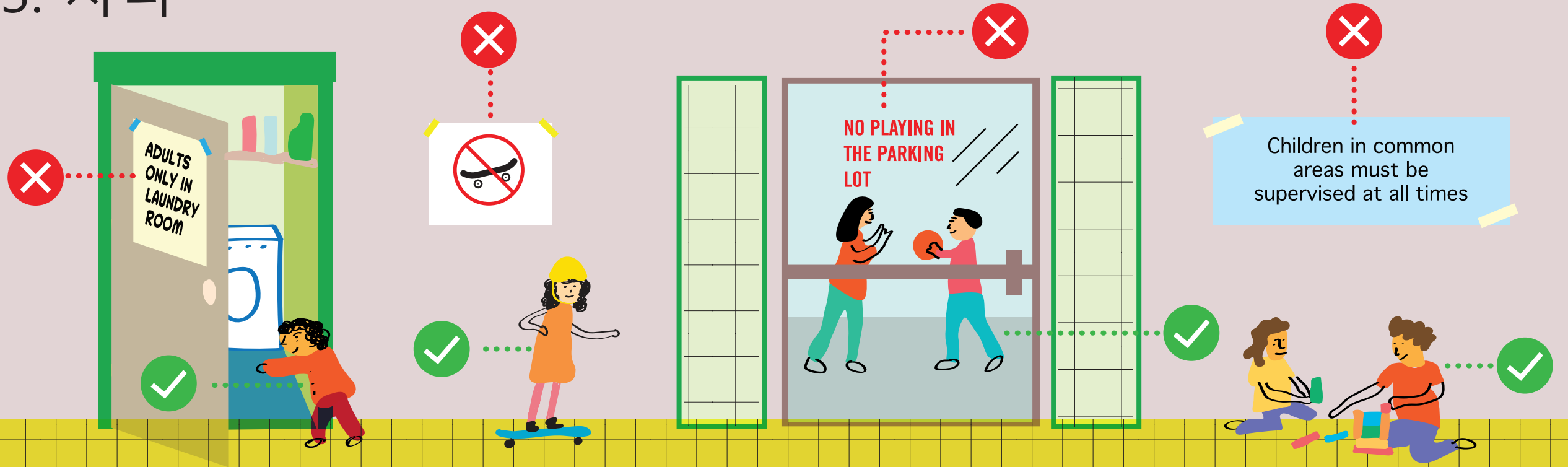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 법은 주택 공급자가 소득원을 근거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단순히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 보장 연금, 보충적 소득 보장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재향 군인 연금, CalWorks, 일반 부조(General Assistance), 자녀 양육비, 이혼 수당, 실업 보험 및 수당 이 포함됩니다.

주택 공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재직 증명, 여러 해에 걸친 고정적인 고용 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 비근로 소득자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등의 행위
- 전문직 또는 기술 또는 의료 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를 언급하는 행위

섹션8 바우처가 있는 경우 HUD 또는 기타 기관에서 보장하는 권리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자녀와 함께 주거할 권리

주택 공급자는 자녀가 있는 세입자의 임대 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정식으로 허 가 받은 "노인용 주거 시설"은 예외로 합니 다.) 가족들이 주거지의 모든 구역을 이용 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규정 을 만들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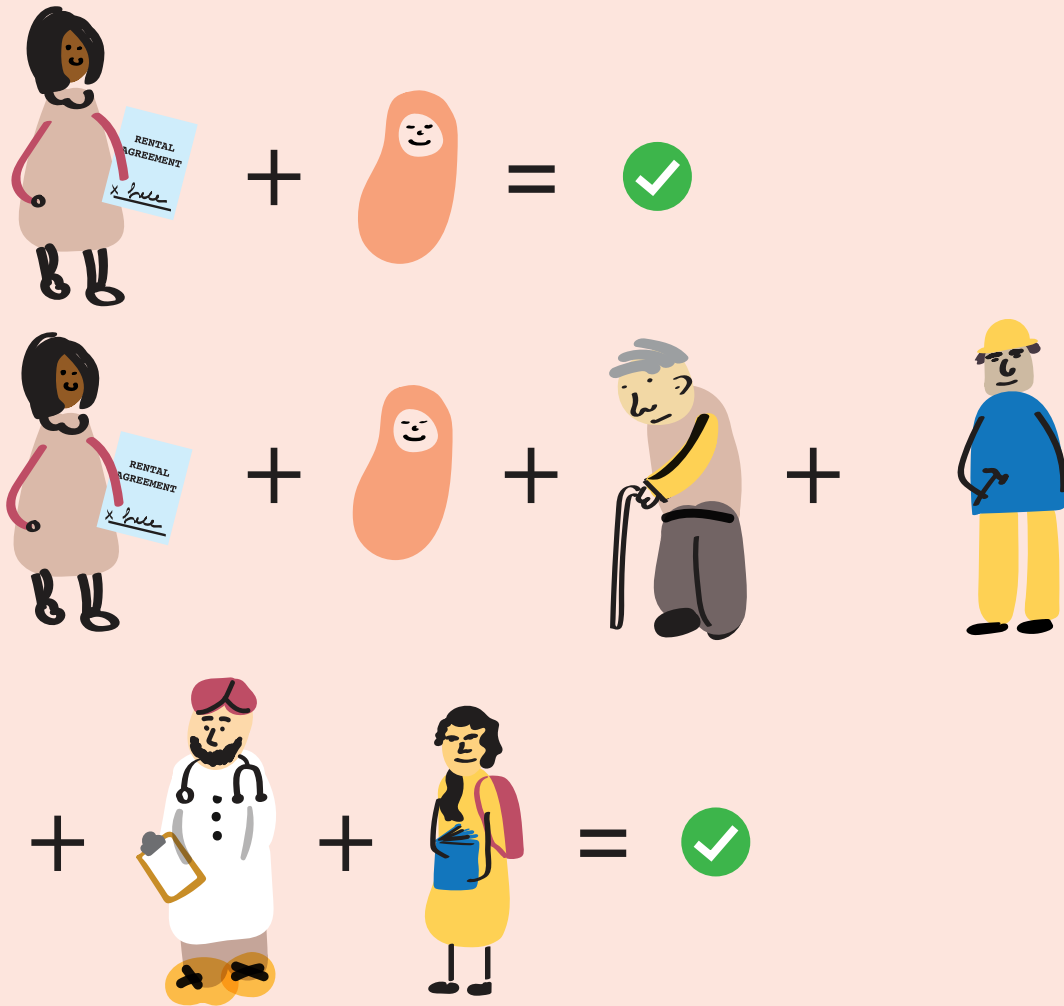
불법적인 규정의 예

- "어린이는 공동 구역 내에서 항상 부모 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 구역에서 자전거 또는 스케이트 보드 사용 금지"
- "성인만 세탁실 출입 가능"
- "주차장에서 놀지 말 것"

잘못된 행동의 예:

- 밖에서 놀았다고 아이를 나무라는 행위
- 아이가 주간에 시끄럽게 군다고 경고장 을 발송하는 행위
- 장난감,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등의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
- "이 건물은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당 하지 않다"거나 "놀 공간이 없다" 등 과 같이 가족이 이사 오지 못하도록 막 는 표현
- 밤에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행위
- 임신 또는 입양이나 자녀의 법적 양육권 확보를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 에서 쫓아내거나 넓은 곳으로 이사하도 록 요구하는 행위

4. 룸메이트



남는 방이 있을 때 룸메이트를 들일 권리

함께 사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인원 기준은 아파트의 크기 및 배치도를 근거로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가족의 임대를 막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지역 건축 법규, 면적, 하수도 제한 및 입주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야 합니다.

5. 언어

APT 2 BD/2 BA

ENGLISH ONLY

地震海引的核泄漏福居民促撤离, 成千上万人逃离家园, 如今几乎没有人

KEY FEATURES
Bedrooms: 2 Beds / Bathrooms: 1 Baths
Lease Duration: 1 Year
Pets Policy: No Pets Allowed
Laundry: On -site

DESCRIPTION
Spectacular 2 bedroom / 1 bathroom spacious unit, with lots of natural light. Very well kept Apartment Complex with nearby shopping, schools and freeways. Apartment features lots of kitchen cabinets, crown moldings throughout, dishwasher, and lots of windows. One parking space included. Laundry onsite. THIS IS A MUST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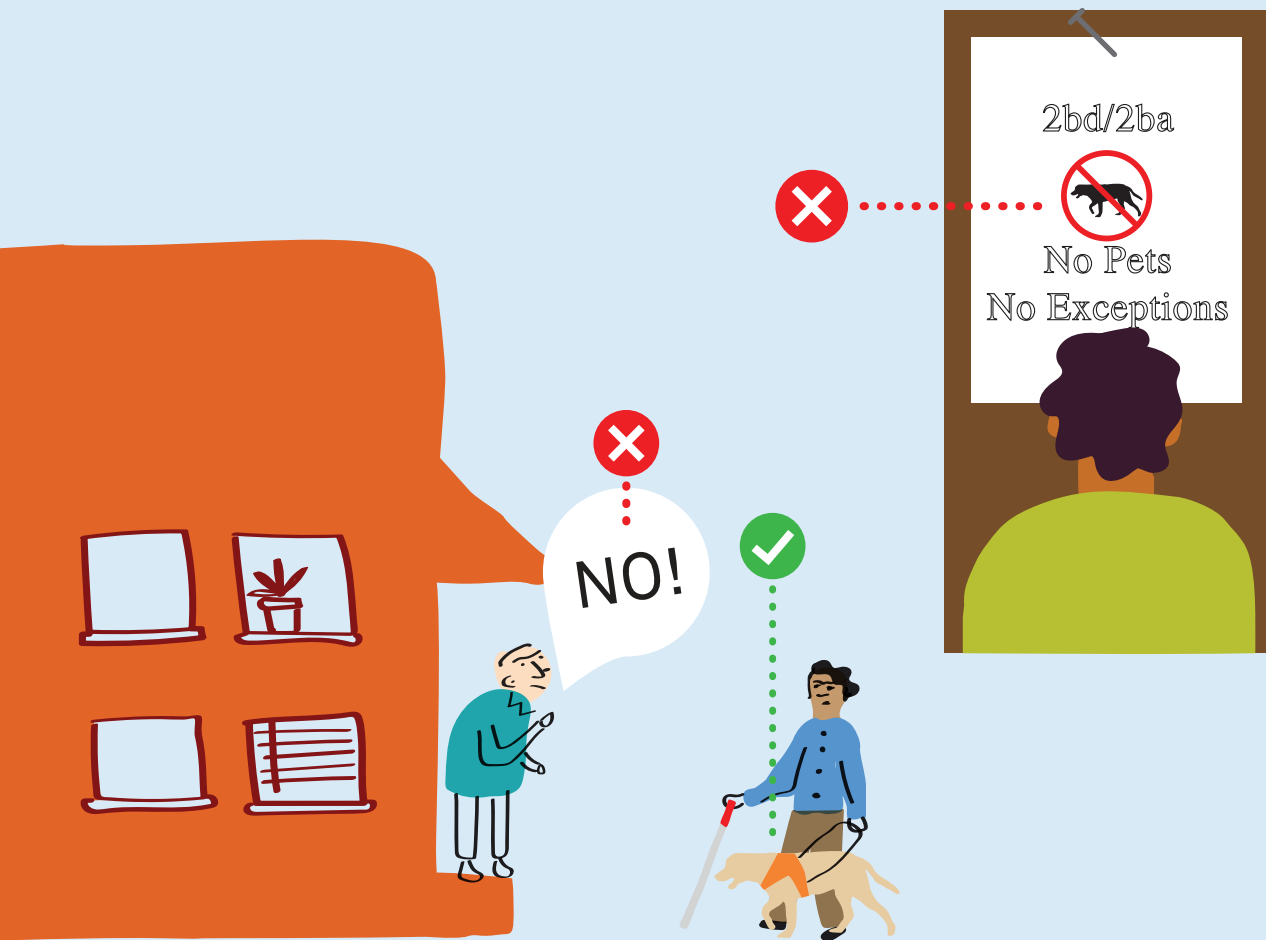
ENGLISH ONLY!

OUR APPLICATION GUIDELINES: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할 권리

개인 주택 공급자가 직접 통역자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가 통역자를 고용한 경우 주택 공급자는 해당 통역자를 통해 이야기해야 하고 통역자가 세입자의 언어로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영어 외 언어로 임대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당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영어 외 언어로만 주거지를 광고하는 행위는 특정 출신 국가나 인종을 보다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보조 동물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권리

주택 공급자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합리적인 편의상 보조동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애완동물 보증 금이나 추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장애인 보조동물을 구하거나 계속 기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자는 장애인 보조동물의 혈통이나 크기를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러한 동물이 직접적인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협이 되거나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경우 장애인 보조동물을 기르겠다는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보조동물은 애완 동물과는 다릅니다. 주택 공급자는 세입자가 장애인 보조동물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는 의료인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의료 진단서와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물"에 대한 온라인 증명서는 장애인 보조동물의 필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7.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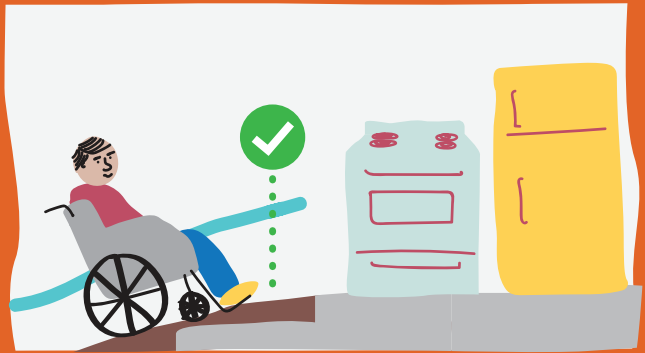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주거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는 해당 거처가 세입자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의 정책, 규정 또는 절차를 변경하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해 주택 주택공급자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한 한 집과 가까운 주차장
- 장애인 보조 동물
- 입주 관리인을 비롯한 관리인
-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유일한 원인이 장애인 경우 특별 대우 또는 보증인과 같은 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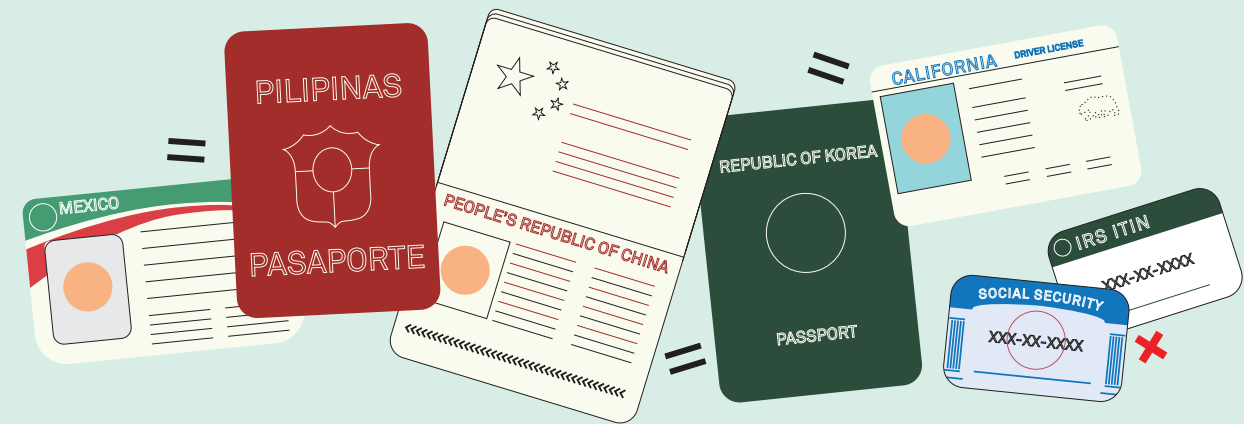
7. 장애



세입자가 본인 장애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비로 집을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택공급자가 세입자의 장애를 실제로 인식, 추정 또는 가정하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임대를 거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 가능한 1 층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휠체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흠이 생기는 경우를 우려하여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시각 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주택 관련 서류를 읽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8. 이민 신분



이민 및 거주 신분을 알리지 않을 권리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공급자는 운전 면허증, 비자,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이름 및 이전 주소로 신용 평가 및 신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자는 영사 ID 카드 및 여권 등 외국에서 발행된 신분 증명을 인정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지를 장래의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9. 괴롭힘

차별



괴롭힘 없이 거주할 권리

세입자의 보호 상태를 이유로 고립되거나 불편한 기분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외설적인 표현, 비방이나 중상, 성관계 또는 데이트를 대가로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제안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공급자는 또한 다른 세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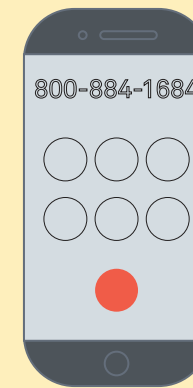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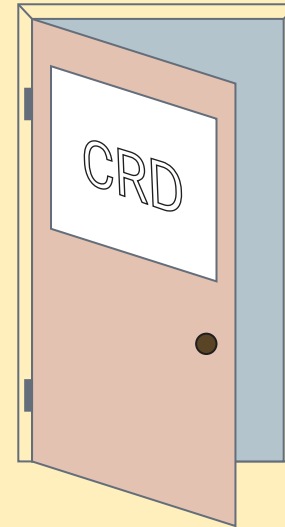
최근의 괴롭힘 예:

- 세입자 또는 이민 가정을 “불법 체류자” 라고 호칭하는 행위
- 세입자 또는 이슬람 가정을 “테러리스트”라고 호칭하는 행위
- 성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
- 종교적 믿음에 대해 괴롭히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 가족이 먹는 음식에서 나는 냄새나 즐겨 듣는 음악 종류에 대해 불평하는 행위

캘리포니아 주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혈통, 장애 여부,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성향, 소득원,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유전 정보, 연령, 이민 여부, 주 언어 또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이유로 임차인 및 주택 구매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거의 모든 유형의 주택을 확보하고 거주하는 데 있어 이러한 특성은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주택 또는 주택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한 세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

- 집주인
- 관리인
- 유지 관리 담당 직원
- 부동산 중개인 및 대리인
- 주택 소유자 협회
- 이동 주택 단지
- 지역의 주거 담당 기관 및 주 정부
- 호텔, 모텔 및 휴가용 임대 주택 소유자 및 관리 회사



이 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을 근거로 하는 이웃으로부터의 괴롭힘까지도 금지하며 통지 후에도 주택 공급자가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웃의 괴롭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 주거 및 공공시설 내에서 불법적인 차별 및 증오 폭력 및 인신매매 행위 범죄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는 민권 부서 (Civil Rights Department)의 임무입니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면 CRD에 전화 및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장애로 인해 온라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사전 민원 양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CRD는 전화로 민원을 듣고 사전 민원 양식을 작성해 드립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이거나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중계 서비스 (California Relay Service)(711)를 통해 연락하거나, VRS 서비스 (800) 884-1684(음성)를 통해 CRD에 직접 전화하십시오. 방문 약속을 예약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센터(전화: 800-884-1684(음성) 또는 800-700-2320(TTY) 또는 이메일: contact.center@calcivilrights.ca.gov)로 문의하십시오. CRD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 형식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